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4
----------	------

제출연월일 : 2018. 3.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안 제13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2018. 1. 12 ~ 2018. 2. 1.(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6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13조(납기) ----- ----- ----- <u>20만원</u> ----- ----- ----- -----.</p>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